

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1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6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가. 현행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에는 명예군민증서 수여시 의회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 회기중이 아닌 경우 관내에서 기관장으로 재직하다 전출이나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데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므로
- 나. 명예군수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의회에 통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게 적시에 수여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명예군민증 수여결정 절차 간소화(안 제2조)
- 명예군민증 수여결정 절차를 평창군의회 의결사항에서 평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토록 함.
 - 결정된 사항을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단서조항 추가
- 나. 제명 및 조문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수정
-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⇒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“붙임”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14. 4. 28 ~ 5. 19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”를 “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소속되지안”을 “소속되지 않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결을”을 “평창군정 조정위원회(이하 “군정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을 한때에는 14일 이내에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관계서류는 이를”을 “관계서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의회의 의결을”을 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”로,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취소한 경우에는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원하는 때”를 “원하는 경우”로, “제14조”를 “제2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<u>소속되지안는</u> 내국인과 외국인·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창군 명예군민증서(이하 “명예군민증”이라 한다)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명예군민증 수여결정)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<u>평창군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결을</u>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조(증서서식 및 서류보존) ① (생략)</p> <p>② 공적에 관한 조서 등 <u>관계서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소속되지 않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명예군민증 수여결정) ① ----- ----- ----- <u>평창군정조정위원회(이하 “군정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 결정을 한때에는 14일 이내에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<u>현행 제2항과 같음</u>)</p> <p>제3조(증서서식 및 서류보존) ①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 <p>② ----- <u>관계서</u></p>

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
제4조(명예군민증의 취소)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.

제5조(권리의무 부담)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·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.

류는 -----
----.

제4조(명예군민증의 취소) ① ---

----- 군정조정
위원회의 심의를-----
있으며, 취소한 경우에는 의회
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권리의무 부담) -----

원하는 경우-----
----- 제21조-----

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최 찬 응
연락처	(033) 330 - 2210

관계법령 발췌

□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조례

제3조(위촉 및 해촉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관외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수로 위촉할 수 있다.

1. 군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

2.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군수는 명예군수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한다.

③ 군수는 명예군수가 임기 중에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명예군수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주민의 권리)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(이하 “지방선거”라

한다)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21조(주민의 의무)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.